

지방공사의료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

의안
번호

79

제출년월일 : 2003. 3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「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(2003. 2. 12)」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 개별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1. 4. 28이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심의사항

- 청주의료원 — 3건, 121.20㎡
 - 간호사 기숙사 중축 정량철골조 78.0㎡ (27,950천원)
 - 영안실 매점 중축 정량철골조 25.2㎡ (12,499천원)
 - 영안실 문상객실 중축 콘테이너 18.0㎡ (4,774천원)
- 충주의료원 — 2건, 598.33㎡
 - 가동(3층) 회의실 중축 정량철골조 205.39㎡ (82,534천원)
 - 가동(2층) 입원실 중축 철골콘크리트 392.94㎡ (244,141천원)

3. 무상사용 재산 현황

가. 기 허가재산 현황(2003. 2월말)

(단위 : m², 천원)

기 관 명	재 산 현 황			비 고
	건수	면적	재산평가액	
계	31건	75,898.83	26,432,872	
청주의료원	16건	51,133.45	19,097,102	
토 지	2필	36,986.00	11,240,202	
건 물	14동	14,147.45	7,856,900	
충주의료원	15건	24,765.38	7,335,770	
토 지	8필	15,347.00	3,344,930	
건 물	7동	9,418.38	3,990,840	

나. 무상사용 허가 재산 목록 : 별첨과 같음

4. 관계법령 : 별첨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

관 계 법 명

< 지방재정법시행령 >

제82조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'99. 1.21>

1.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3조(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. <개정 '99. 1. 21>

제85조(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) ①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,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2000.10.20>

제88조(잡종재산의 대부)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'94.9.29, '99.4.30, 2000.10.20>

6.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